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 번	안 호	58
--------	--------	----

제출년월일 : 1997. .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1. 제안이유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의 등록 등에 관한 권한이 시장 고유업무로 되어 있어 민원인들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체계를 구축하고자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심의의결을 요구함(경기도 권고사항임)

2. 주요골자

-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의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 폐업에 관한 사항을 읍, 면장에게 권한위임(안 제7조, 9조, 11조)
-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읍, 면장에게 권한위임(안 제12조)
-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의 교육에 관한사항을 읍, 면장에게 권한위임(안 제7조)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별표"의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중 일련번호 "제1호" 다음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일련번호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수임기관
2	음반및비디오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업 등록	음반및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제7조	읍, 면
		②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동법 제9조	읍, 면
		③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업 폐업	동법 제11조	읍, 면
		④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 행정처분	동법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1조	읍, 면
		⑤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 관련업자 교육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읍, 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표 조 문 구 신

일련번호	현				개				고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수임기관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수임기관	
2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음반및비디오물 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음반및비디오물 유통관련업등록	음반및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제7조	음·면	민원인 민원도
						② 음반및비디오물 유통관련업등록 사항 변경신고	동법 제9조	음·면	
						③ 음반및비디오물 유통관련업폐업	동법 제11조	음·면	
						④ 음반및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 행정처분	동법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1조	음·면	
						⑤ 음반및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 교육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음·면	

置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地方自治團體의 長중에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の 職務를 代行할 者를 지정한다.

(全文改正 94.12.20)

第90條 (地方自治團體의 長の 辭任)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그 職을 辭任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地方議會의 議長에게 미리 書面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第90條의2 (地方自治團體의 長の 退職)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된 때에는 그 職에서 退職된다.

1.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겸임할 수 없는 職에 就任한 때
2. 被選舉權이 없게 된 때
3. 第89條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의 長の 職을 상실한 때

[本條新設 94.3.16]

第91條 削除 <94.3.16>

第2款 權 限

第92條 (地方自治團體의 統轄代表權)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당해 地方自治團體를 代表하고, 그 事務를 統轄한다.

第93條 (國家事務의 委任) 市·道와 市·郡 및 自治區에서 施行하는 國家事務는 法令에 다른 規定이 없는 한 市·道知事와 市長·郡守 및 自治區의 區廳長에게 委任하여 행한다.

第94條 (事務의 管理 및 執行權)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事務와 法令에 의하여 그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委任된 事務를 管理하고 執行한다.

第95條 (事務의 委任등)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條例 또는 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權限에 속하는 事務의 일부를 補助機關, 소속行政機關 또는 下部行政機關에 委任할 수 있다. <改正 94.12.20>

②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條例 또는 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權限에 속하는 事務의 일부를 管轄地方自治團體나 公共團體 또는 그 機關(事務所·出張所를 포함한다)에 委任 또는 委託할 수 있다. <改正 94.12.20>

③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條例 또는 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權限에 속하는 事務중 調査·檢査·檢定·管理業務등 住民의 權利·義務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事務를 法人·團體 또는 그 機關이나 개인에게 委託할 수 있다. <改正 94.12.20>

(후 55)

④地方自治團體의 長이 위임 또는 委託받은 事務의 일부를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다시 위임 또는 委託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事務를 위임 또는 委託한 機關의 長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改正 94·12·20>

第96條 (職員에 대한 任免權등)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소속職員을 指揮·監督하고 法令과 條例·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任免·敎育訓練·服務·懲戒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第97條 (事務引繼)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退職하는 때에는 그 소관事務의 일체를 後任者에게 引繼하여야 한다.

第3款 地方議會와의 관계

第98條 (地方議會的 議決에 대한 再議要求와 提訴)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地方議會的 議決이 越權 또는 法令에 위반되거나 公益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議決事項을 移送받은 날부터 20日 이내에 이유를 붙여 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改正 94·3·16>

②第1項의 요구에 대하여 再議의 결과 在籍議員 過半數의 출석과 出席議員 3分の 2이상의 贊成으로 前과 같은 議決을 하면 그 議決事項은 확정된다.

③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再議決된 사항이 法令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大法院에 訴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第159條第3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新設 94·3·16>

第99條 (豫算上 執行 불가능한 議決의 再議要求)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地方議會的 議決이 豫算上 執行할 수 없는 經費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議決事項을 移送받은 날부터 20日 이내에 이유를 붙여 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改正 94·3·16>

②地方議會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經費를 削減하는 議決을 한 때에도 第1項과 같다.

1. 法令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에서 義務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經費
2. 非常災害로 인한 施設의 應急復舊를 위하여 필요한 經費

③第1項 및 第2項의 경우에 있어서는 第98條第2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100條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先決處分)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地方議會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議員의 拘束등의 사유로 第56條의 規定에 의한 議決定足數에 미달하게 된 때를 말한다)와 地方議會的 議決事項중 住民의 生命과 財産保護를

(추 55)

●音盤및비디오물에 관한法律(1995.12.6) [法律第5016號全文改正]

第1條 (目的) 이 法은 音盤 및 비디오물의 質的向上을 도모하고 音盤 및 비디오物 産業의 健全한 育成・발전을 促進함으로써 國民의 文化生活 및 情緒生活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音盤”이라 함은 音이 有形物에 固定되어 再生될 수 있도록 製作된 物體(産業用 實驗테이프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2. “비디오物”이라 함은 映像(音의 隨伴여부를 가리지 아니한다)이 有形物에 固定되어 再生될 수 있도록 製作된 物體로서 테이프 형태의 것과 디스크 기타 新素材 형태의 것(“새映像物”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映畫, 音樂, 게임등이 收錄되어 있지 않은 것에 한한다) 및 公衆衛生 法 第12條의2의 規定에 의한 遊技機具 및 그 機板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3. “音盤製作業者”라 함은 音盤의 製作을 業으로 하는 者를 말한다.
4. “비디오物製作業者”라 함은 비디오물의 製作을 業으로 하는 者를 말한다.
5. “製作”이라 함은 音盤 또는 비디오물을 企劃製作하거나 複製등의 방법으로 製造하는 것을 말한다.
6. “音盤・비디오物流通關聯業者”라 함은 다음 各號의 營業을 영위하는 者를 말한다.

가. 音盤販賣業: 音盤을 販賣・配布하는 營業

나. 비디오物販賣業: 비디오물을 販賣・配布하는 營業

다. 비디오物貸與業: 비디오물을 貸與하는 營業

라. 비디오物鑑賞室業: 비디오物 및 비디오物 視聽施設을 갖추고 비디오물을 視聽提供(利用者가 직접 視聽施設을 作動하여 利用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하는 營業(公演法에 의한 公演場 營業 및 風俗營業의 規制에 관한法律 第2條第3號의 規定에 의한 風俗營業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第3條 (音盤・비디오물의 振興施策의 수립) ①文化體育部長官은 音盤 및 비디오物 産業의 振興을 위한 施策(이하 “振興施策”이라 한다)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후 70)

版社の商號 기타 文化體育部令이 정하는 사항등 각각의 해당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第7條 (流通關聯業者의 登錄) ①音盤·비디오物流通關聯業者(이하 “流通關聯業者”라 한다)가 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郡守·區廳長(自治區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②流通關聯業者중 비디오物鑑賞室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文化體育部令이 정하는 施設을 갖추고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여야 한다.

③第5條의 規定은 流通關聯業者에 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8條 (流通關聯業者의 준수사항) 流通關聯業者는 건전한 營業秩序의 유지를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第9條 (登錄事項의 變更申告) 第4條第1項 또는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 者가 登錄事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文化體育部長官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이하 “登錄廳”이라 한다)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10條 (登錄證) 登錄廳은 第4條第1項 또는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 者에게 그 業種을 구분하여 登錄證을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하며 第9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한 경우에는 登錄證을 更新交付하여야 한다.

第11條 (閉業) 第4條第1項 또는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 者가 당해 業을 閉止한 때에는 閉止한 날부터 7日이내에 登錄證을 登錄廳에 반납하여야 한다.

第12條 (登錄取消등) ①登錄廳은 第4條第1項 또는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製作·販賣·配布·貸與·視聽提供등 당해 營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登錄한 때
2. 第4條第2項 또는 第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을 유지하지 못한 때
3. 第5條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法人의 代表者나 任員이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3月이내에 그 代表者나 任員을 改任한 경우를 제외한다)
4. 第8條의 規定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5. 第9條의 規定에 의한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한 때

6. 正當한 사유없이 1年이상 계속하여 國產音盤 또는 國產비디오物의 製作實績이 없을 때(製作業者에 한한다)

7. 第22條第1項 各號의 規定에 해당하는 音盤 또는 비디오物을 販賣・配布・貸與 또는 視聽提供하거나 販賣・配布・貸與 또는 視聽提供등의 目的으로 陳列 또는 보관하거나 不特定多數人이 出入하는 場所에서 上映(音의 再生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한 때

8.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이 取消된 者는 그 登錄取消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日 이내에 登錄證을 登錄廳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第4條第1項 또는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할 수 없다.

1.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이 取消된 후 1年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停止 命令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者(法人인 경우에는 그 代表者 또는 任員을 포함한다)가 같은 業種을 다시 영위하고자 하는 때

2.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이 取消된 후 1年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停止 命令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같은 場所에서 이 法에 의한 業種을 다시 영위하고자 하는 때(流通關聯業의 경우에 한한다)

第13條 (課徵金の 賦課) ①登錄廳은 第4條第1項 또는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 者가 第12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營業停止處分에 갈음하여 1千萬원이하의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金을 賦課하는 위반행위의 種別과 정도에 따른 課徵金の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登錄廳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을 期限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の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한다.

第14條 (聽聞) 登錄廳은 第12條第1項 또는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처분의 相對方 또는 그 代理人에게 의견을 陳述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相對方 또는 그 代理人이 正當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처분의 相對方의 住所不明등으로 意見陳述의 기회를 줄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추 70)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시행령**(^{1 9 9 6 . 6 . 4}대통령령제15015호전문개정)

제 1 조 (목적) 이 영은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비디오물의 범위) 법 제 2 조제 2 호 단서에서 “영화, 음악, 게임등이 수록”이라 함은 영화, 음악, 게임등이 개별적으로 또는 상호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그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을 말한다.

제 3 조 (제작업자의 등록) 법 제 4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음반 또는 비디오물제작업자등록신청서에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조 (등록의 예외) 법 제 4 조제 1 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획제작만을 하고 복제등의 방법으로 제조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하는 경우
3.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연수기관이 자체교육·연수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4. 방송법에 의한 방송법인,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 및 프로그램공급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방송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5.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이 그 사업의 선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6. 관혼상제·종교의식에 관한 것등 기념으로 남기기 위한 음반·비디오물을 제작하는 경우로서 일반에게 판매·배포·대여 또는 시청제공할 목적이 아닌 경우

제 5 조 (등록시설의 기준) ①법 제 4 조제 2 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음반제작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카세트테이프·디스크류·레코드등의 음반유형별 복제시설 및 그 부수시설
2. 비디오물제작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테이프·디스크류·플로피디스켓·게임팩등의 비디오물유형별 복제시설 및 그 부수시설

(후 73)

②제 1 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세부기준은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한다.

제 6 조 (유통관련업자의 등록) 법 제 7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반·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이하 “유통관련업자”라 한다)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유통관련업자등록신청서에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조 (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 8 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 8 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 9 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9 조 (등록증) ①등록청은 제 3 조 또는 제 6 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마친 때에는 업종을 구분하여 등록증을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하며, 제 8 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등록청은 등록자가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못쓰게 된 등의 사유로 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한 때에는 이를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 (과징금의 산정기준)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은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영업정지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등록청은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등을 참작하여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 (과징금의 납부) ①등록청이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등록청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추 73)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6.6.7) (문화체육부령제25호전문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작업자의 등록신청) ①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음반 또는 비디오물제작업자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3조에서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정관 또는 규약,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의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 한한다)
2. 영업소 및 공장의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각 1부
3. 음반 또는 비디오물제작시설의 명세서 1부

제3조 (등록시설의 기준)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시설기준은 음반제작업자의 경우에는 별표 1, 비디오물제작업자의 경우에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 (표시사항) 법 제6조에서 “기타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사항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번호
2. 음반 또는 비디오물의 제명
3. 면당 수록시간
4. 수입 또는 제조추천번호
5.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청등급 구분표시 및 시청등급별 안내문구

제5조 (유통관련업자의 등록신청) ①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관련업자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6조에서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정관 또는 규약,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의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 한한다)

(추 73)

2. 영업소의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각 1부
3. 시설의 명세서 및 영업소 평면도 각 1부(비디오물감상실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4. 영업소관할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것으로서 소방법령에서 정하는 각종 소방시설의 설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소방시설완비증명서 1부(비디오물감상실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제 6 조 (비디오물감상실업의 시설기준) 법 제 7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 7 조 (유통관련업자의 교육) ①영 제 7 조 및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관련업자는 법 제 7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후 1월 이내에 음반 또는 비디오물의 판매·대여·시청제공질서에 관하여 등록청이 실시하는 기본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법 제12조 및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의 처분을 받은 유통관련업자는 등록청이 실시하는 교정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등록청이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일시·내용등을 기재한 교육통지서를 7일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시간은 4시간이내로 하고 기타 교육의 내용·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등록청이 정한다.

⑤등록청은 제 1 항 내지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실시를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관련업자가 설립한 협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 8 조 (유통관련업자의 영업시간) 영 제 7 조 및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유통관련업자의 영업시간은 09시부터 24시까지로 한다. 다만, 음반판매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9 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①영 제 8 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변경신고서는 음반 및 비디오물제작업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 3 호서식, 유통관련업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 4 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 8 조에서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추 73)

1. 등록증

2.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10조 (등록증)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은 음반 및 비디오물제작업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유통관련업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11조 (행정처분의 기준)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등록청은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수입등 추천신청) ①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음반 또는 외국비디오물의 수입 또는 제조추천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13조에서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당해 음반 또는 비디오물의 수입 또는 제조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한다.

제13조 (수입추천의 예외) 영 제1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음반 또는 비디오물을 수입하는 자가 수입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세관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반입추천 신청) ①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음반 또는 외국비디오물의 반입추천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15조에서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반입의 목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제15조 (추천증)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 또는 제조추천증은 별지 제10호서식, 반입추천증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제16조 (심의신청) ①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의 심의신청서는 국산비디오물의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 외국비디오물의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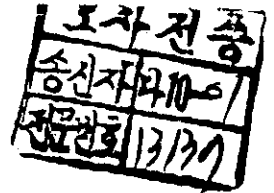
②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음반심의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제17조 (광고·선전물의 심의) 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음반 또는 비디오물광고·선전물심의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제18조 (심의필증)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필증에는 별표 5의 심의

(후 73)

"생각도 세계화 행동도 세계화"



경 기 도

우 441-701 수원.권선.매산로 3가 1 / 전화 0331)249 - 4675 / 전승249-2279 / 담당 : 민완식

문서번호 문화 86000- 18아

시행일자 1996. 9. 4 ()

발음 받는곳 참조

참조

선결	중앙관	지	
집	일자 기간	1996. 9. 0	결
수	번호	826/196	재
처리과	문화계	공	
담당자	한기영	람	

제목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 민원업무 처리개선 위임 권고

1. 도기획 12450-829('96. 5. 31)호와 관련입니다.

2.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9조, 제12조,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의 등록, 변경등록, 등록주소 및 과징금의 부과업무가 시장·군수 고유사무로 분류되었으나

3. 등록업무는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6조등에 명시된 등록요건 및 제반 사항관을 적용 검토하는 단순민원으로 고도의 전문성 및 판단을 요하지 않는 사무로서

4. 업소등록 및 휴·폐업신고를 위하여 민원인이 시·군정을 방문하는등 시간·경제적 불편을 겪고 있어 행정의 현지성 확보를 통한 행정능률 제고 및 민원의 편익도모를 위하여 동 업무를 사무위임조례개정을 거쳐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판단 되어 권고하니 적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끝.

경 기 도 지

문화정책과장 직인



받는곳 : 러(문화공보담당관, 문화예술과장)